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06

발의연월일: 2024. 7. 30.

발 의 자: 박정현 • 박지원 • 이해식

정준호 · 이광희 · 장종태

박홍배 • 이재정 • 민병덕

신정훈 · 김한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의 입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그 대표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신분 규정이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,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기관 소속의지방공무원이 전입·파견 등의 방식으로 보해져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큼.

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,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이 잘 이루어지 도록 하고자 함(안 제4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 중 "지방공무원"을 "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임기제공무원(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책지원 전문인력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	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
력) ① (생 략)	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<u>지방</u>	②「지방
<u>공무원으로</u> 보하며, 직급·직무	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
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	임기제공무원(일반직공무원의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
	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한
	<u>다)으로</u>